

예 산 총 칙

2016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159,854,386	4,795,632
일반회계	140,098,905	4,202,967
특별회계	19,755,481	592,664
기타특별회계	19,755,481	592,664
의료급여기금	280,156	8,405
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	1,225,732	36,772
주거환경개선사업	501,173	15,035
주차장	17,462,154	523,865
지하수관리	235,266	7,058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	51,000	1,53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안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,562,83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,3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